

다산포럼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전 위원장이 두 번이나 우리를 놀라게 했다. 첫 번째는,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일반점'으로 일한 것이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전관예우'의 관행에 따라 곧장 로펌으로 직행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충격적이었다.

대법관까지 지난 그에게 거액의 연봉이 보장된 로펌의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를 뿐만 아니라 '동네 서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펼쳤을 때 우리는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청렴결백하게 마감하고 '편의점 아저씨'로 돌아온 그를 사람들은 현대판 '탈각발이'라 불렀다. 그만큼 그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두 번째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편의점 생활 6개월 만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 변호사로 '전직(轉職)'한 사건이다. 편의점을 떠나면서 그가 던진 말은 "무항산(無恒產)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맹자'의 구절이다.

이 말은 맹자가 제(齊) 선왕(宣王)에게 왕도 정치(王道政治)의 의료를 가르친 것인데, '항산'은 가족이나 농토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을 뜻하고, '항심'은 인간의 착한(善) 본성을 뜻한다.

기본적인 재산이 없으면 백성들이 착한 본성을 잃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니, 먼저 백성들의 기본 재산을 마련해주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그런 연후에야 천하에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또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선비(士) 뿐이다"라

말했다.

그렇다면 김능환씨를 일반 백성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선비로 보아야 할까? 일반 백성으로 본다면 그는 적어도 항산을 가진 사람이다. 집도 있고, 편의점도 소유하고 있다. 이만하면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 '항심을 지키기 위하여 로펌으로 간다'는 말은 맹자적 관점에서 보면 좀 어폐가 있다. 한편 그를 선비로 본다면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역시 맹자의 본뜻과는 어긋난다.

그리므로 그가 편의점을 떠난 이유를 "무항산 무항심" 때문이라 한 것은, '맹자'의 문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능환씨의 로펌행을 탓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싶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그와 같은 사람에게 편의점 아저씨로 생을 마친다면 이야기로 국가적 손실이 아니겠는가.

미래의 어느 날,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서민 김능환씨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보낼 생각은 없었던 듯하다. 그는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해 그 것도 없고, 평생 해왔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라 말했다.

그렇다. 그는 편의점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하려는 '다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항산(恒產)이 없었던 것이라 믿고 싶다. 굳이 맹자 시대의 항산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가 하려고 했던 '다른 일'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동네 서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일이라 믿고 싶다. 그래야 6개월의 편의점 생활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편의점을 떠나면서 그는 "서민의 삶에서 꿈꾸던 민족의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의 어느 날,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서민 김능환씨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헌법국가의 책임과 종북세력에 대한 단상

문현철
초당대학교 교수

헌법은 법 중의 법이다. 그래서 일반법률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들이 만들지만, 헌법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제정된 헌법은 국가운영시스템과 국가통치기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 법령이나 공권력의 집행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다.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의 핵심은 헌법 전문과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모든 국정운영의 목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그리고 행복추구이다. 따라서 모든 공권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를 전제로 하는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공권력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작동되는 원리이며 그랜드 디자인인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행복추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권리분립,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기본권보장, 시장경제, 사유재산보장, 선거제, 국제평화주의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사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국가운용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주요시설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사제 총기제조법 습득을 독려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내란음모 행위를 자행하려는 구체적 계획과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세계가 부려워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 대한민국, 그 선진 헌법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

첫째, 북한을 주종하는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들이 주종하는 북한의 국가운영 체계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가? 북한은 인권을 비롯한 권리분립과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기본권보장, 선거제도, 시장경제, 사유재산보장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나라이다. 종북세력이란 이러한 북한

을 추종하는 세력을 일컫는다. 결국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입법부인 국회에 진출해 있다. '농담'이었다고 소름끼치는 미소를 보이는 공당의 대표가 과연 법과 대학에서 헌법과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둘째,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종북세력들에 대하여 일회일반하는 감정적 대처가 아닌 이미 구축된 시스템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바로 그것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민든 헌법에 의한 엄준한 대처이다. 내란음모 종북세력들에 대하여 헌법상 위헌정당해산, 형법상 내란음모죄, 국회법상 의회제명, 정당법상 국고지원금 회수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국정원 등 법률상 책임기관의 엄중하고 차가운 '이성'이 작동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종북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내란음모 종북세력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분석이다.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문제가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의한 눈에 보이지 않은 업무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적 측면의 선명하고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업무, 강력

한 업무로 폐려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헌법을 보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석기와 통진당 세력들은 지난 5월 RO 모임 등에서 국회를 혁명교도부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과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한 반국가적 행태를 자행하였다. 말을 바꾸는 이석기 피의자가 더 이상 말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국정원의 노력은 이제는 정보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보기관은, 국정사상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작용도 있으 있으나,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직접 투표로 제정한 민주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수호 기관이며, 국민보호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있다.

다섯째, 안보의식에 대한 쉬운 이해가 필요하다. 안보의식이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의 출입말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안전보장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나라와 국민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의식은 국민이 만든 헌법을 수호하는 철학이고, 국가와 국민의 책임이며, 지식인의 양심이고, 평균인의 상식이다. 그리고 안보의식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社說

세계수영대회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의 공문서 위조사건 수사가 착수 한 달 보름여 만에 관련자 2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지검은 9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강운태 시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짬었다.

그러나 유치과정의 전후를 살펴보면 정부의 감정적 대응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과 문체부가 이 사건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여 한씨의 단순한 실수로 잠정 결론지어 놓고도 유지직 직원 저임금 데린 깊은 수사의뢰와 예산 지원 철회라는 대 있다.

수사 의뢰와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회를 광주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세계육상대회에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지 않았는가.